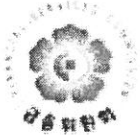


붙임1.

다정한 금융, 따뜻한 금융, 본분한 금융



금융위원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개인정보 불법 유통 활용차단 후속조치 관련 협조요청

1. 「개인정보 불법 유통·활용 차단조치 시행」(‘14.1.24), 「대부업체 개인정보 유출방지 회의」(‘14.1.27), 「TM 등 비대면 영업제한 후속조치」(‘14.2.4) 관련입니다.

2. 정부의 「개인정보 불법 유통·활용 차단조치」에 따른 대출 권유·모집제한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 직권검사 대상 대부업체는 [붙임]과 같이 조치를 예정입니다.

3. 각 시·도에서 관할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대부업체 개인정보 유출방지 회의」(‘14.1.27) 후속조치 및 상기 대출 권유·모집제한 관련 조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개인정보 불법유통·활용차단 후속조치 1부, 끝.

금융위원회위원장

수신자 방조합장부장관(지 역경제과장),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전북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합장사무관 최성규 서인금융과장 최윤희 전일 2014. 3. 5.

합조자

시행 서인금융과-882

종수

주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금융위원회

http://www.fsc.go.kr

전화번호 02-2166-8476 팩스번호 02-2166-8549 skcfo12@korea.kr

부 등개(6)

개인·금융·소통·협력의 정부9.0,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개인정보 불법유통·활용차단 후속조치(대부업)

◆ 대부업체도 금융회사에 준하여 3월초 TM 영업재개 조치

- 직권검사 대상업체는 협회에 제출한 CEO확약서에 대해 금감원 접수 후 TM재개(추후 금감원 직권검사시 점검)
- 기타 업체는 지자체를 통해 재개절차 진행(안행부 협조)

① 금융권 TM영업재개 현황

- 각 금융회사는 보유정보의 적법성에 대한 CEO 확약서를 금감원에 제출한 후 관련 TM영업을 재개
 - * ① 금융사 자체점검 → ② 적법성 CEO 확약 → ③ 금감원이 CEO 확약을 확인 후 영업재개 → ④ 금감원의 CEO 확약내용 점검
- 기존 자사고객정보를 이용한 보험사 TM부터 영업을 재개
- 보험 일반대리점 및 여전사 등 전 금융권 TM영업도 적법성이 확인 되는대로 순차적으로 재개

② 대부업체 TM영업재개 추진 방안

- (진행절차) 금감원 직권검사 대상은 대부업협회에서 보유정보의 적법성 확인(CEO 확약서) 후, 금감원 제출
 - * ① 대부업체 자체점검 → ② 적법성 CEO 확약(대부업협회 제출) → ③ 협회의 확인서 금감원 접수(3월초) → ④ TM재개 → ④ 금감원 직권검사시 점검
- 기타 업체는 지자체에서 적법성 확인* 후 재개
 - * 금감원 직권검사 대상에 준하여 절차 등 확인가능
- (재개방식) 자사고객에 대한 전화방식의 TM만 재개(3월 첫째주)
- 대부업체는 비대면거래 영업 관리대장 등을 통해 적법정보 관리



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금융감독원

수신 수신처 참조
(경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사본수신
제목 금융분야 개인정보 대청소 캠페인 관련 협조요청

1. 귀 협회(중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금융위원회에서 송부한 "개인정보 대청소 캠페인 관련 협조요청(서민 금융과-1186, 2014.9.30)"과 관련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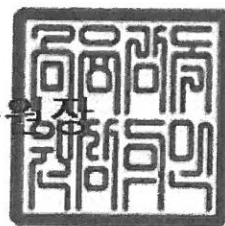
3. "범정부 개인정보 대청소 캠페인 세부추진계획안(금융분야)"을 참고하여 2014.10.10.까지 자체적인 캠페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캠페인 홍보 및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청소 캠페인 홍보물(포스터, 전단지, 리플렛 등)은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업무자료-공통업무-개인정보보호] 메뉴에 게시

4. 각 금융협회(중앙회)에서는 소속 회원사의 추진실적을 취합하여 2015.1.12.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양식은 추후 별도 송부)

- 붙임 1. 개인정보 대청소 캠페인 관련 협조요청 1부
2. (붙임1) 범정부 개인정보 대청소 캠페인 계획안(종합) 1부
3. (붙임2) 범정부 개인정보 대청소 캠페인 세부추진계획안(금융분야) 1부. 끝.

금융감독원장



수신처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생명보험협회 회장, 손해보험협회 회장 직무대행, 한국여신금융협회 회장,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회장, 신용협동조합중앙회 회장, 산림조합중앙회 회장, 신용정보협회 회장,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담당부서 IT·금융정보보호단 (금융정보보호팀)

수석검사역 차재성

팀장

전결 2014.10.06.

유현석

합의자

시행 IT정보호 -00025 (2014.10.06.)

우 150-74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 http://www.fss.or.kr

전화번호 02-3145-7197 팩스번호 02-3145-7856

/ fresh@fss.or.kr

/ 비공개(7)



안 전 행 정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례 전파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부는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의 보호수준 향상과 실태 개선을 위하여 정부부처 합동으로 구성한 「개인정보보호합동점검단」을 중심으로,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침해 우려가 있는 취약 분야 및 다량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 등을 대상으로 실태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검사 결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례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중앙행정기관은 소속 및 산하기관에, 지방자치단체(시·도)는 시·군·구 및 소속 산하기관 등에 전파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위반 내용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의무 위반(제15조)
- 개인정보 과도 수집 및 서비스 거부 금지(제16조)
- 개인정보의 파기 의무 위반(제21조)
- 개인정보 처리 위탁 시 준수사항 위반(제26조)
-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위반(제28조)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 위반(제29조)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위반(제30조)

4. 아울러,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각종 안내사항 및 참고자료(법령, 가이드라인, 교육 및 홍보자료 등)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14년 분야별 행정처분 사례(공공) 1부. 끝.

안전행정부장관

수신자

감사원장,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법제정보과장), 국가보훈처장(정보화담당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정보화통계담당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정보화담당관), 금융위원회위원장(서민금융과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행정관리담당관), 기획재정부장관(정보화담당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정보화담당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외교정보보안담당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정보화담당관), 국방부장관(사이버방호정책담당관), 안전행정부장관(정보통계담당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정보통계담당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보화담당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정보관리담당관), 보건복지부장관(정보화담당관), 환경부장관(정보화담당관), 고용노동부장관(정보화기획팀장), 여성가족부장관(정보통계담당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정보화담당관), 국제청장(전산기획담당관), 관세청장(정보관리과장), 조달청장(정보기획과장), 통계청장(정보화기획과장), 검찰총장(정보통신과장), 병무청장(정보기획과장), 방위사업청장(정보화기획담당관), 경찰청장, 소방방재청장(정보화담당관), 문화재청장(정보화담당관), 농촌진흥청장(지식정보화담당관), 산림청장(정보통계담당관), 중소기업청장(고객정보화담당관), 특허청장, 기상청장(정보통신기술과장), 해양경찰청장(정보통신과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지식정보팀장), 서울특별시장(정보통신보안담당관), 부산광역시장(유시티정보담당관), 대구광역시장(정보화담당관), 인천광역시장(U-정보통신담당관), 광주광역시장(정보화담당관), 대전광역시장(정보화담당관), 울산광역시장(정보화담당관), 경기도지사(정보통신보안담당관), 강원도지사(정보화담당관), 충청북도지사(정보화담당관), 충청남도지사(정보화지원과장), 전라북도지사(창조정보과장), 전라남도지사(정보화담당관), 세종특별자치시장(정보화담당관), 경상북도지사(정보통신담당관), 경상남도지사(정보통계담당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정보화담당관)

주무관 김정택 행정사무관 이영수 개인정보보호 전결 2014. 9. 23.
과장 문금주

협조자

시행 개인정보보호과-4015 (2014. 9. 23.) 접수 서민금융과-1171 (2014. 9. 24.)

우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509호 / <http://www.mospa.go.kr>

전화번호 02-2100-3040 팩스번호 02-2100-1739 / y2kblue@mospa.go.kr / 대국민 공개

국민이 중심이 되는 정부, 정부3.0이 만들어가겠습니다

붙임**『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 행정처분 사례('14년 공공)****□ 수집·이용, 제공 시 동의 및 고지 의무 위반(제15조, 제17조, 제18조)****① 개인정보 수집 시 정보주체의 동의 미획득(§15①)**

제15조제1항 위반 :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1회 위반 1,000만원)

☞ 교육기부 홈페이지에서 정보 수집 시 동의 미획득

② 개인정보 수집 시 필수 고지사항* 미고지(§15②)

* 고지항목(4개) : 수집·이용목적, 수집항목, 보유·이용기간, 미동의 시 불이익 고지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항 위반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1회 위반 600만원)

☞ 홈페이지 통한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거부권 및 불이익 사항(1개) 고지 누락

☞ 홈페이지 통한 개인정보 수집 시 보유·이용기간(1개) 고지 누락

☞ 홈페이지 민원게시판에서 개인정보 수집시 필수사항 전부(4개) 고지 누락

☞ 홈페이지에서 고지한 수집항목과 실제 수집항목 불일치, 이용기간 불명확으로
2개 항목 고지 미흡

□ 개인정보 과도 수집 및 서비스 거부 금지(제16조)**① 개인정보의 필요 최소한 수집·과도한 수집 금지(§16①)**

제16조제1항 위반 : 과태료 조항 없음(시정조치/개선권고 대상)

☞ 홈페이지 회원정보 수집 후 준영구 보유(⇒ 이용 및 보유기간을 수집
목적에 맞게 조정 필요)

□ 개인정보의 파기 의무 위반(제21조)**①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21①)**

제21조제1항 위반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1회 위반 600만원)

☞ 홈페이지에서 탈퇴한 회원 정보 미파기

☞ 홈페이지에서 탈퇴 회원정보 일부 미파기

□ 개인정보 처리 위탁 시 준수사항 위반(제26조)

① 위탁 시 필수사항*을 문서에 미반영 (§26①)

- * 필수사항(7개) : 위탁 목적·범위, 목적 외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 재위탁 제한, 안전성 확보 조치, 관리현황 점검·감독, 손해배상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1항 위반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1회 위반 200만원)

- ☞ 위탁 시 필수사항을 문서에 일부 또는 전부 누락

② 개인정보처리 수탁사를 미공개 (§26②)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제한) 제2항 위반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1회 위반 200만원)

- ☞ 수탁자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음
☞ 진로체험관리 홈페이지 유지보수 1개소 공개 누락

③ 수탁사 교육 및 실태점검 등 관리·감독 소홀 (§26④)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제한) 제4항 위반 : 시정조치 명령

- ☞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실태점검 등 관리·감독을 실시하지 않음

□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위반(제28조)

①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미실시 (§28②)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제2항 위반 : 시정조치 명령

- ☞ 시간강사에 대한 교육 미실시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 위반(제29조)

- * 조치사항(6개) :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저장·전송 시 암호화, 접속기록 보관, 보안 프로그램 설치, 물리적 보호조치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1회 600만원)

㉔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조치 위반

- ☞ 외부에서 관리자페이지에 접속 시 VPN이나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아이디/비밀번호만으로 인증함
- ☞ 홈페이지 회원관리의 관리자 계정을 5명이 공유하여 사용
- ☞ 내부관리계획으로 수립한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실제 적용하지 않음
- ☞ 퇴사자 접근권한 미삭제, 사용자별 권한변경 내역 미보관
- ☞ 안전하지 않은 비밀번호 사용

㉕ 개인정보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 위반

- ☞ 홈페이지에서 비밀번호 저장 시 일방향이 아닌 양방향 암호화 실시
- ☞ 비밀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저장 시 암호화 미조치
- ☞ 홈페이지에서 회원의 비밀번호 전송 시 암호화 미조치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위반(제30조)

①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 및 공개 시 필수항목* 누락(§30①~②)

- * 필수사항(8개) : 처리 목적,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자 제공, 위탁, 정보주체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처리 항목, 파기 사항, 안전성 확보조치

제30조(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제1~2항 위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1회 200만원)

- ☞ 처리방침 수립 시 필수항목 일부 누락(위탁, 파기, 안전조치)
- ☞ 처리방침 공개 시 필수항목 일부 누락(제3자 제공)



금 융 위 원 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금융기관 지문정보 파기관련 협조요청

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4531(2014.10.22.)호 관련입니다.

2.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우리위원회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 저장에 따른 지문정보 수집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를 하기로 결정(2014.8.21)하였고, 불임과 같이 통보(2014.10.22.)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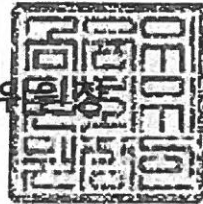
3. 이와 관련하여 향후 금융회사가 본인확인 등을 위한 신분증 사본저장 과정에서 지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귀 협회에서는 각 해당 업권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지문정보의 경우 향후 5년 동안 파기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 및 전파 부탁드립니다.

붙임 1 인권위권고 관련 조치계획_금융위 1부

붙임 2,3 인권위 권고 결정문 송부 공문 및 권고문 각 1부. 끝.

금융위원회



수신자 신용정보협회장, 한국대부금융협회장

주무관 김유란 행정사무관 전은주 신용정보팀장 하주식 서민금융과장 전결 2015. 1. 21.
최용호

협조자 행정사무관 최성규

시행 서민금융과-89 (2015. 1. 21.) 접수

우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금융위원회 / <http://www.fsc.go.kr>

전화번호 02-2156-9664 팩스번호 02-2156- / yurank@korea.kr / 비공개(5)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3.0,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인권위 신분증 사본저장 제도 개선 권고에 대한 조치계획

① 지문정보 수집 금지

- 향후 금융회사가 본인확인 등을 위한 신분증 사본저장 과정에서 지문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

* 금융회사는 신분증 사본저장시 지문정보를 제외하는 별도 시스템 등 대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

② 순차적('15년~'19년) 파기 권고 및 이행점검

- '19년까지는 업권별 계획*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지문정보를 모두 파기**할 수 있도록 권고

* 각 업권별 협회가 파기계획을 마련하고, 진행상황을 금감원이 감독

** 서류 보관 등의 문제로 파기가 어려운 경우, 지문정보를 확인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스티커 부착, 마스킹 처리 등 여타 방안을 강구할 필요

- 금감원 검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파기조치 미이행건에 대해서는 별도 제재없이 개선하도록 지도할 계획

※ 다만, 향후 지문정보를 정보주체 동의없이 수집·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위반 등으로 처분 가능



국가인권위원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 저장에 따른 지문정보 수집에 대한 제도 개선 권고 결정문 송부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위원회는 2014. 8. 2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 저장에 따른 지문정보 수집에 대한 제도 개선 권고”를 하기로 결정하였기에 불임과 같이 결정문을 보내 드립니다.

3.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권고 이행 시 이행계획 또는 불이행 시 그 이유를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임: 1.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 저장에 따른 지문정보 수집에 대한 제도 개선 권고 결정문 2부 및 정본(별송). 끝.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수신자 안전행정부장관(주민과장), 금융위원회위원장(금융소비자과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담당자 박성훈 인권정책과장 전결 2014. 10. 22.
이석준

협조자

시행 인권정책과-4531 (2014. 10. 22.) 접수 금융소비자과-367 (2014. 10. 23.)

우 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6 (을지로1가, 금세기빌딩) 11층 / <http://www.humanrights.go.kr>

전화번호 02-2125-9835 팩스번호 02-2125-0918 / cyber152@nhrc.go.kr / 대국민 공개



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금융감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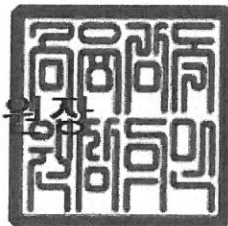
수신 수신처 참조
(경유)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사본수신 사본수신처 참조
제목 금융회사 업무 위탁회사의 고객정보 관리 관련 유의사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금융회사와 업무위탁 계약 체결한 위탁회사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고객과의 통화내용을 녹취한 음성파일(고객정보가 포함된 파일)이 외부에 노출된 사례가 발생하였는바,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특히, 위탁회사가 보관중인 고객정보(음성 녹취파일 포함)가 권한 없는 제3자의 접속에 의하여 노출될 위험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미흡사항 발견 시 신속히 개선 조치하는 등 고객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금융감독원장



수 신 처 가(1-2, 4-13, 15-17, 20-28, 30-38), 기타(1-14, 91, 140-142, 327, 331, 338, 356, 439, 441, 443-447, 450, 470-471, 475, 480-481, 489-490, 492-493, 496, 498, 500, 505-506, 516, 518-519, 523-524, 527-530, 533, 535, 537, 540, 542, 544, 555-557, 559-560, 563, 565, 571, 573, 577-579, 583, 586), 나(1, 3-6, 10-14), 나(3-9, 11, 13, 15, 17, 19-21, 27-29, 34-35, 37-40, 45-48, 51, 53, 55-58, 62-65, 67-76, 78, 80-92), 다(1-16, 19, 21-63, 66-74), 라(1, 3-5), 라(2-24, 26-51, 53-82, 84-106, 108-124, 471-473), 마(1-2, 4, 7-18, 20-31), 마(1-41), 바(1-5, 7-12), 사(1, 3-5, 7-10, 12, 14-18, 154-157), 아(1-9, 11-14, 16-20, 22-25), 차(1-27, 29-35, 37-38, 40-45, 47-63), 카(1-13, 15-27, 29, 31-40, 44-46, 48-60, 62-75), 타(1-2, 5-6, 8, 10-13), 파(1-15, 17-25, 27-33, 35-43, 45-48, 50, 52-54, 57, 60, 62, 64-68, 70-73, 77-82, 84-85, 87-88, 92-93, 95, 98, 100-103, 105-106, 113-118, 121, 123-124, 126-130, 132, 134-135, 137-143, 145-149, 151, 156, 159, 163-168, 170-174, 176, 178-185, 187, 192, 194, 196, 198, 200-201, 203-218, 220-223, 225, 230-238, 242-243, 245-249, 251-255, 257-276, 278-280, 283, 285, 287-294, 296-301, 303-307, 309-312, 314, 316-318, 320-322, 324, 330, 333-334, 336-337, 341-342, 345-346, 348-350, 353, 355, 357-358, 361, 364, 367, 369-373, 375-376, 378-382, 385-393, 395-399, 401-404, 406-408, 410-413, 415, 417-432, 434-441, 443-445, 447-457, 459-489, 491-523), 하(1, 3-11, 14-16), 자-강원(1), 자-광주, 전남(1-3, 6-7), 자-대구, 경북

사본수신처

생명보험검사국 검사기획팀, 보험영업검사실 검사기획팀, 손해보험검사국 검사기획팀, 기획검사국 검사기획팀, IT·금융정보보호단 검사기획팀, IT감독실 IT감독팀, 일반은행검사국 검사기획팀, 특수은행검사국 검사기획팀, 저축은행검사국 검사기획팀, 대부업검사실 검사기획팀, 상호금융검사국 검사기획팀, 여신전론검사실 검사기획팀, 금융투자검사국 검사기획팀, 자산운용검사국 검사기획팀, IT감독실 신용정보1팀, IT감독실 신용정보2팀

담당부서 IT·금융정보보호단 (금융정보보호팀)

수석검사역 차재성

팀장

유현석

선임국장

전결 2015.03.05.
김유미

합의자

시행 IT정보호-00023 (2015.03.05.)

우 150-74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 <http://www.fss.or.kr>

전화번호 02-3145-7197 팩스번호 02-3145-7189

/ fresh@fss.or.kr

/ 비공개(7)